

박예안. 2020.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인권연구』 3(1): 133-150.  
Park, Yae-Ahn. 2020. “Cyber Sex Crimes in Korea”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3(1): 133-150.

[현장논단]

##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박 예 안\*

###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체는 같다.
- III. 맺음말

### I. 들어가는 글

A가 하갯길에 그들과 마주친 것은 2주 전이다. 중학교 친구와 집으로 가던 길, 어른의 세계를 엿보는 것 같은 가벼운 흥분과 치기 어린 장난스러움으로 맥주 한 캔을 사서는 둘이서 거품 반, 웃음 반으로 골목길에서 나누어 마시던 그 날.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자신도 A양 중학교 졸업생이라며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 학교에 음주 사실을 알리겠다고 으박지르는 C에게 A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다. C는 겁에 질린 여중생들에게 ‘내가 만약에 전화했을 때 안 받으면 술 마신 걸 학교에 알려서 학교 못 다니게 할 수 있다’라고 협박했고, 6일 뒤에 전화를 걸어 동네 야산으로 불러냈다. 이번에도 ‘만약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박은 어김없이 따라왔다.

11명의 남학생은 여중생들을 동네 야산으로 데려갔고, 강제로 술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먹였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여중생들이 실신하자 그중 4명의 남학생이 성폭행했다. A와 그녀의 친구는 고통과 분노를 느꼈지만,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신고를 해보았댔자 그러니 애당초 어디 여자애들이 술을 마시고, 남자가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나갔느냐는, 흔히 말하는 ‘노는 애,’ ‘몸을 막 굴리는 애’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A와 친구는 힘들지만 덮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8일 뒤, 가해자들은 A와 친구를 다시 불러낸다. 지금 당장 지난번 장소로 나오지 않으면 온 학교와 동네에 너희들이 어떤 애들인지 ‘소문’내겠다고. 결국, A와 친구는 나갈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성폭행을 당한다. 그 자리에는 22명의 남성이 있었고, 이들 모두가 가담하였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를 그 시작부터 최근까지 정리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글임에도 그 시작을 실제 2011년 일어난 강간 사건의 소개에 할애한 것은 소설보다 기막힌 이 사건을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단 이 사건이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그 전개가 판에 박은 듯 닮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나이 여성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기준’에서 ‘일탈’한 여자아이를 기망과 협박 등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다음에는 적반하장으로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하며, 그 협박을 도구로 점점 더 자주, 더 많은 가해자가 성폭행에 가담하며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으로 짓밟아온 범죄의 구조가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혹은 ‘n 번 방’ 사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멈춰 있는 중에도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 사건 또한 여성 피해자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성폭력의 굴레 속으로 잡아채는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방법으로 ‘주변인에게 네가 문란한 여자임을 보여줄 증거를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성

을 옮겨올 때는 범죄의 구조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그 주요 활동 무대만 온라인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여 소비하고 착취하는 동시에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성에 대한 사회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여성을 협박하는 가해자에 대해 사회는 관대한 반면, 정작 피해 여성은 자신이 꽃뱀 혹은 문란한 여성으로 몰릴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 요구는 고사하고 범죄 신고조차 망설이게 하였던 ‘n 번 방’ 사건은, 그 무대가 디지털 세계로 옮겨갔을 뿐 ‘피해 여성의 평판 훼손에 대한 협박’을 범죄의 주요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휴대폰 여자의 증거가 될 만한 ‘영상 혹은 사진 등의 유포 협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대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의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이 순식간에 유포와 재유포를 거듭하며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sup>1)</sup>다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치명적인 피해인 동시에 가해자들이 최대한 이용하려 들었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다. 이처럼 시대와 기술의 변화로 가해자 협박의 파괴력이 더 커진 만큼, 법원이 먼저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응당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불법 영상물을 보는 것이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1) 2018년 7월 28일, SBS TV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에서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유출하는 웹하드와 업로더의 관계를 추적한 바 있다.

## Ⅱ.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체는 같다.

### 1. 그 시작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이다. 당시 디지털 성범죄는 “원치 않는 성적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정진욱, 1999, 10쪽)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최근 비디오 등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비동의 불법 유포를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을 포함하지 않는 당대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시작된 범죄 양상이 아니며, ‘빨간 마후라’ 사건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최근의 ‘n 번 방’ 사건까지 꽤나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 2. ‘빨간 마후라’

1997년 7월 11일 MBC 뉴스는 ‘10대가 직접 출연해서 만든 음란 비디오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해당 촬영물에는 17세 남자 고등학생 2명과 붉은 스카프를 두른 14세 여중생 A양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영상물 안에 등장하는 여중생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스카프 때문에 ‘빨간 마후라’ 사건으로 불리게 된다.

8mm 캠코더로 가해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촬영되었던 해당 영상은 여학생의 동의 없이 유포되었으나, 언론은 여중생을 피해자가 아닌

‘음란 비디오의 주인공’으로, 보호가 아닌 처벌과 비난의 대상으로만 비추며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 가기 급급했다. 경찰의 검거현장에 동행한 방송 카메라에 피해 여학생의 모습은 고스란히 담겼고, 여과 없이 방송되었으며, 피해 여학생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엉뚱하게도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는 행위 자체’만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가 이 문제를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청소년에 해악을 끼치는 음란물 제작 문제로 인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 여학생이 가출 청소년이었으며, 해당 영상의 촬영 전에 가해자 남성 4명이 가출 청소년인 A양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즉, 해당 영상물은 당시 기사에 자주 등장하였던 표현대로 ‘음란 비디오’인 것이 아니라 성폭행 범죄의 증거 영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 사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그저 ‘10대들의 일탈’로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이들을 모두 처벌하는 데 집중하였고, 실제로는 피해자였던 A양도 음란한 영상을 ‘함께 제작했다’라는 이유로 가해자인 두 남성과 똑같이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다.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가 등장하는 촬영물은 청계천 불법 비디오 암시장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방송에 보도되기 전에는 가해 남학생들이 다니는 인근 고교 주변에서 전파되던 수준이었던 해당 영상의 유포가 뉴스 보도 이후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다. 아마도 수사 기관, 혹은 취재 과정 중에 유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을 이 영상물은 암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또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개인 간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한 다른 불법 촬영물 또한 용산 전자상가와 종로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다. 일차 유포자와 이차, 삼차 유포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 영상물을 복사하여 불법적으로 유포·판매하였고, 피해 영상물은 심지어 ‘검열에 저항하고 표현의 자유를 표방한다’라는 명목으로 한 지방 국립대학의 축제에서 공개 상영되기도 했다. 이는 A양을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음란물의 주인공으로 보았기에 가능한 발상이었을 것이고, 성착취 영상물 속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사회에 만연한 시각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빨간 마후라’는 9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한국 남성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는 키워드 정도로 취급되었다. 학생 신분으로 해당 영상을 복사하여 알음알음 판매하는 방법으로 꽤 째짤한 용돈 벌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인 양 거리낌 없이 방송에서 말한 남성 연예인도 있을 정도이다. 그에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유포, 판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다. 길으로는 ‘일탈 청소년’이라며 피해 청소년을 손가락질하면서도 뒤로는 피해 영상물을 보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그저 보기만 했다는 ‘n번 방의 관전자’의 모습과 흡사하다.

사건 이후, 성폭력의 고통에 더해 자신의 피해 영상이 끝없이 유포, 재생되는 상황에서 A양은 일상을 박탈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노예 매춘’을 당하게 된다. 경찰이 미성년자 매춘행위에 대한 일제 기획 수사를 벌인 2000년에 ‘빨간 마후라’ 사건의 피해자인 A양이 서울 강남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되었고 ‘A양이 결국 성매매 여성이 됐다’라는 일방적인 언론의 근황 보도를 통해 또다시 대중에게 소환되었고, 고통받았다. 이러한 가십성 보도 행태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여성계의 비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언론은 앞다투어 ‘빨간 마후라’ 속 ‘여성 주인공’에게만 온갖 관심을 집중했다. 이처럼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도, 정작 여성 청소년은 성에 대해 무지해야 하

며, 만약 주체적으로 성에 대해 말하면 음란함이나 문란함으로 규정되는 이중적인 잣대, ‘순결’과 ‘성적 대상’이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에, 여성 청소년은 협박을 당하고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되며, 그 배경 속에서 끝없이 ‘n 번 방’의 진화와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3. ‘X양 비디오’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가정용 인터넷이 상용화된 시점인 1999년에 여성 방송인 B 씨는 자신이 전 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게 된다. 고액을 요구하는 협박에 응하지 않자 해당 불법 촬영물은 곧 비디오 암시장에 유포되었다. 곧이어 2000년에 또 다른 여성 연예인의 당시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두 사건 모두 최초 유포자로 전 연인이 지목되면서, 이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혹은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다.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합의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승희, 2017, 68쪽). 언론에서 종종 사용되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는 “가해자 중심의 영어표현이며 ‘리벤지’라는 말 자체에 피해자가 복수를 당할 만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식의 느낌이 있어 리벤지 자체를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은영, 2019, 167).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촬영 과정 중의 피해자 동의 여부뿐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영상의 유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X양 비디오’의 피해자인 B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사회에 유통돼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으로선 여자로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영상물 유출 혐의를 받았던 B 씨의 전 연인은 B 씨와의 영상물로 인지도를 쌓아 모델로 데뷔까지 하게 된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이 오래되었음을 말해준다. ‘X양 비디오’로 알려진 B씨가 등장하는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이 언론의 주목을 받던 시점에 공교롭게도 한국 인터넷 가입 인구가 급증하였다는 향간의 이야기는 씁쓸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혀 없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광범한 유포는 고스란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금전적인 협박에 응하여 갈취를 당하거나 자신의 사적인 순간이 영원히 인터넷상에 떠돌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던 피해자의 고통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임에도 실명을 언론에 공개 당하고 사생활의 유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는 죄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삶은 강제로 멈춰져 버리곤 하였다.

B양 외에도 다수의 여성 연예인이 사적인 순간에 대한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 피해를 겪으며 ‘X양’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때마다 피해자인 이들이 마치 죄인처럼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비난과 활동 중단이라는 직접적 피해와 함께 끝없는 영상의 유포라는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 가해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피해자는 사회의 비난과 법의 공백에 방치되어 지속해서 2차, 3차 가해를 당한다는 점에서 전술한 ‘빨간 마후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이 “인터넷 포털이나 음란물 사이트·웹하드·파일공유 사이트(P2P)·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이은영, 2019, 167쪽)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 촬영물이 올라가면 순식간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P2P 사이트, 웹하드 등을 통해



공유되며,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견잡을 수 없게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 절차를 밟더라도 공유 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물의 완전 삭제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이나 일상에서 2차 피해를 겪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사실이 피해자를 더욱 절망하게 하였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 4. ‘소라넷’

‘소라넷’은 1999년 6월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국내 최대 불법 촬영물 및 피해 촬영물 게시 사이트의 명칭이다. 운영되기 시작한 지 17년 만인 2016년 4월 7일에 공식 운영 종료를 선언하였는데, 종료 시점에서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라넷’은 IMF 외환위기 이후 유흥업소가 대거 등장하면서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성매매 후기 사이트’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들은 단순히 성매매 후기를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이야기를 자랑하며 공유하고 공범을 모집해 술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모의를 하는 등, 가히 텔레그램 ‘n 번 방’의 원형이라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2003년을 기점으로 ‘소라넷’에는 본격적으로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이 대규모 단위로 게시된다. 다시 말해, 해당 사이트가 하나의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회원들이 자유롭게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도록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초창기 피해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었는데, 이는 성매매 후기에서 불법 촬영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라넷 회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지

인이나 연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를 악용하여 100만 명에 달하는 소라넷 회원들은 아동 포르노,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등을 서로 유포·공유하였고,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지 온라인상에서 끝나지 않고, 실시간으로 성범죄를 모의하며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면에서도 소라넷과 ‘n 번 방’ 사건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17년 동안 당국의 눈앞에서 버젓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서 계속 활동하면서도 소라넷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된 덕택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결국, 2016년에 네덜란드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검거까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17년간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라넷 관련한 처벌은 공동 운영자 4명 중 1명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이 선고된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또한, 이곳에서 성범죄를 모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돌려본 100만 명의 소라넷 회원들은 이번에도 ‘가해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했던 소라넷의 경험은 훗날 ‘n 번 방’ 사건의 조주빈, 강훈, 문형욱 등 ‘n 번 방’의 주범을 만들고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였다.

##### 5. ‘웹하드 카르텔’을 이끈 양진호의 구속

소라넷이 사라진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계보는 끊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웹하드’를 통해 발전하게 된다.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갑질로 알려졌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구속되었다. 그는 웹하드 업계 매출 1위인 ‘위디스크’와 3위 ‘파일노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신의 웹하드 업체를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플랫폼으로 사용하며 여성의 고통을 팔아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낸 사람이다.

성인물 제작이 합법화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성인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내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웹하드를 중심으로 성인 영상물이 파일공유방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웹하드 서비스는 “개인의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사업자의 중앙 서버에 개인이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충훈, 2017, 94쪽)으로 이루어진다. 웹하드 운영자는 해외 성인물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해 다수의 비동의 성적 촬영물과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하였다. 소라넷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갈 곳을 잃었던 각종 성범죄 영상이 고스란히 웹하드 세계로 옮겨와 조직적으로 유통되었고, 웹하드 회사를 키우는 자본금이 되었다.

이처럼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웹하드 업체는 불법자료를 거르는 필터링 업체와 유착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웹하드에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동시에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며 ‘성착취 카르텔’을 공고하게 구축하였다. 즉, 웹하드 업체는 금전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삼중 수익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게다가 소라넷과 달리 웹하드 운영자는 법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자신들을 감시해야 할 필터링 업체를 고용 혹은 운영’을 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피하였다. 웹하드 사후 관리에 대하여 법이 느슨하게 적용한 점을 악용한 셈이다.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활용되어 불법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지 잘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모자라 금전적 어려움까지 함께 가중되는 결과를 일으켰다.

웹하드, 텔레그램, 다크웹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이 나날이 주도면밀하고 조직적으로 제작·유포되는 데에 일조하고 있으며, 유포된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반영구성, 확장성으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의 범죄성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숨방망이 처벌은 불법 영상물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 6. ‘웰컴 투 비디오(W2V)’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어서 ‘어둠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에서 운영됐던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가 있었다. 전 세계 32개국에 걸쳐 이용자만 128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 유통 사이트로, 이곳에서는 온갖 아동 대상 불법 성착취 영상물들이 유통됐는데, 심지어 생후 6개월 된 아기까지도 그 대상이었다. 손정우는 2015년 해당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자 역할을 하면서 25만 건의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하던 중,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함께 검거되면서 그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가 자리 잡은 곳은 ‘다크웹’을 기반으로 The Onion Router(이하 TOR)과 I2P(Invisible Internet Project)와 같은 특정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다. TOR는“사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무작위로 ping 함으로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호”(박웅신, 2019, 55쪽) 한다는 점에서 추적하기 매우 어렵다. 손정우는 금전적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판매할 생각을 하였고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주로 거래하며 확인된 것만도 4억 667만 원의 불법 수익을 거두었다.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족

하여 처벌이 미비할 경우, 언제든지 불법 성착취 영상물 산업으로 발전하여 아동을 성 상품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은 약 41만 원을 지급하여 6개월 자유 이용권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포르노를 자유롭게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손 씨는 한국의 웹하드 방식에 착안하여 회원이 보유한 새로운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사이트에 업로드 하면 포인트를 주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즉, 운영자는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여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직접 제작 및 유포하도록 장려하였고, 그 결과 사이트의 전체 영상물 중 45%는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채워졌다.

문제는, 웹캠 투 비디오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그 사이트의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은 다른 다크웹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크웹의 특성상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일부의 위치를 추적하여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처벌이 없을 경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제3의 운영자는 언제든지 등장하여 피해자 아동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크웹은 전 세계 어느 사람이건 익명성을 보장받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범죄 “행위자가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 규제가 가장 느슨한 나라로 활동기반을 이전할 것이며, 그렇게 생산된 아동음란물은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어”(이향선, 2013, 242쪽) 아동 성착취 영상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웹캠 투 비디오’ 사례는 한국은 현재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범죄 형량이 낮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운영자인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나이가 어리고, 갓 결혼한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동일 범죄에 대해 미국에서는 법정최고형이 30년이며, ‘웰컴 투 비디오’ 사건으로 미국에서 처벌된 사이트 회원 마이클 암스트롱(징역 97개월, 보호관찰 20년), 영국에서 처벌받은 카일 폭스(징역 22년)과 큰 차이를 보인다.

### 7. 그리고 텔레그램 ‘n 번 방’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직접적인 성범죄의 위협에 더해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조차 나를 찍는 카메라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적인 사진이나 합성된 사진이 인터넷 어딘가에서 소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오래다. 2020년 3월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를 검거·구속하였다.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 번 방’이 알려지면서 SNS,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원이 수십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그 운영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해 수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관련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파악되고 있다.

소위 ‘n 번 방’으로 불리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주빈, 강훈과 같은 운영자들은 먼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취업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 혹은 성폭력 피해 영상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지속해서 성적인, 혹은 인격적으로 모욕적이고 변태적 잔학성을 띤 영상물을 직접 찍어 올리도록 하였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

텔레그램 ‘n 번 방’의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백만 명이 서명하는 등 이 문제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 개의 텔레그램 ‘n 번 방’에서 수많은 이용자가 치고 빠지는 것을 몇 안 되는 감시·수사 인력이 실시간으로 뒤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둘러 불법 성착취 영상 범죄를 감시하고 수사할 조직과 인력을 크게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게다가 인터넷상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통은 국경과 사법권의 경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전담 신고·수사 기관을 설치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하며, 국제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Ⅲ. 맺음말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N 번 방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다섯 가지 주요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간순으로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약 20년의 역사를 통해 변형되어 왔고, ‘n 번 방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매듭지어진 사건이 없었으며, 법 제도의 정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모든 사건은 공통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대한 본질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법제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엄중한 처벌이 곧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강력히 대응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기성세대 일부는 ‘n 번 방 사건’을 두고 “요즘 애들 무섭다”라고

말한다. 이는 ‘빨간 마후라’ 사건이 보도되었던 1997년의 기성세대가 보여준 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는 기성세대에 만연한 남성연대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하는 강간 문화, 여성 혐오가 일상화되면서 벌어진 결과일 것이다. 남성의 성범죄는 왕성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수’이자 통과 의례 정도로 여기면서도, 여성의 ‘일탈’은 ‘문란함’으로 비난하는 풍토, 교육과 문화가 결국 오늘의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을 있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여중생이 남고교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청계천 암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간 1997년 이래, 한국 사회는 여성의 비동의 유포 영상물이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그저 ‘음란물’로 여기며 소비해 왔다. ‘단톡방 성희롱’, ‘외모 폼평’, ‘불법 촬영물 공유’ 등은 남성연대를 기반으로 한 성범죄의 일부이며,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은 이러한 기존의 남성 권력과 여성 혐오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별 혐오에 대한 인권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성에 대한 성착취 범죄의 유의미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살아남은 사람들 또한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지 모른다는 악몽과 트라우마에 여전히 시달린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유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다. 그렇게 선처를 받아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취직한다. 삶이 부서진 것은 피해자이며,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하다.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요즘, 의약품 업체인 종근당 회장의 장남은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SNS



에 올렸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으며, 본인이 스스로 영상을 삭제했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n 번 방’ 사건은 하루 이틀에 걸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악마와 같은 인물 한두 명이 엽기적인 일탈 행각으로 벌인 것이 아니다. 이제껏 수없이 일어났던 성착취 사건과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쫓겨 쫓겨 결국 ‘n 번 방 사건’을 낳았다.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안일한 인식, 피해자 일상의 붕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우리 사회에 평범한 괴물들을 키워냈다. 그래서 ‘n 번 방’은 ‘n 차의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일 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이 연결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추방에 앞장서야만 한다. 수십만 명이 단기에 응답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청원에서 보인 국민의 공분과 문제의식이 법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제100의 n번 방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은영. 2019.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5(4): 163-176.
- 정진욱. 1999.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사이버 성폭력 현황과 대책 세미나>, 서울: 새정치국민회의.
- 서승희.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3): 59-95.
- 이충훈. 2017.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2): 93-121.
- 박웅신. 2019.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한 신종 수사기법 검토: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수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9(3): 51-83.
- 이향선. 2013. “디지털시대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한국방송회보』 27(2).